**AHA BLS Training Site 운영지침(2016)**

1. **정의**

AHA BLS Training Site(이하, BLS TS)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 **신청과 지정**
   1. BLS TS를 신청 하고자 하는 기관은 BLS TS 신청서(대한심폐소생협회 양식)의 요건을 준수하여 BLS 위원회에 제출하며, BLS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2. BLS TS 신청 시 BLS TS Director 는 유효한 AHA BLS Instructor 로써 '의료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AHA BLS Provider)'의 교육경력이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3. BLS TS Director는 Coordinator 를 겸할 수 있다. 겸하지 않은 경우에 Coordinator 는 비서를 포함할 수 있다.
   4. BLS TS에 **상주**하는 AHA BLS Instructor가 최소 **3명** 이상 이여야 한다. BLS TS 승인 후 상주인원이 미 충족되는 경우 상주하는 AHA BLS Instructor를 6개월 이내 배출해야 한다.
2. **관리 및 감독**

Training Center(이하, TC)는 대한심폐소생협회이며 TC는 TS를 관리 및 감독한다.

**4. TS 운영**

1. BLS TS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Director와 Coordinator 를 두어야 한다.
2. BLS TS의 명칭과 Director, Coordinator 변경 시 기관 최고 책임자(예:병원장, 총장)의 변경 요청 공문을 대한심폐소생협회로 발송한다.
3. 소속된 BLS Instructor를 관리한다.
4. 소속된 교육생을 관리한다.
5. 교육과정에서의 인력, 장비, 기구, 장소 기준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BLS TS는 대한심폐소생협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소속 BLS Instructor 관리**

1. 소속 BLS Instructor는 자격이 유효해야 하며, 2년 동안 4회 이상 '의료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AHA BLS Provider)'에 강사로 참여 해야 한다.
2. BLS TS는 소속 AHA BLS Instructor가 2년 동안 4회 이상 '의료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AHA BLS Provider)'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3. 소속 AHA BLS Instructor 에게 매 6개월마다 교육실적을 통보하여 자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 BLS TS 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을 위해 KACPR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를 소속 시킬 수 있다.
5. BLS TS는 BLS Instructor candidate에게 '소속 예정 TS Director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BLS TS Director가 서명해야 한다.
6. 소속 AHA BLS Instructor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운영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서면보고서를 대한심폐소생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제재를 할 수 있다. 또한 제재 대상자는 TS Director, 교육규정 위반 과정의 Lead Instructor, 교육규정을 위반한 AHA BLS Instructor이다.
7. 1차 위반 : 1차 경고
8. 2차 위반 : 사안에 따라 AHA BLS Instructor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9. 3차 위반 : BLS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AHA BLS Instructor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6. 소속 교육생 관리**

1. 소속 교육생이란 BLS TS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이며, 교육과정의 합격(PASS), 불합격(FAIL)자 모두를 포함한다.
2. 불합격(FAIL)한 교육생이 다른 BLS TS에서 합격(PASS) 한 경우는 합격(PASS)한 BLS TS의 교육생이 된다.
3. 소속 교육생의 BLS Renewal 기한 6개월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1. 교육과정은 '의료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AHA BLS Provider)' 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의료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AHA BLS Provider)'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의 교육규정을 준수한다.
3. '의료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AHA BLS Provider)'은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의료인 심폐소생술 Renewal 교육과정(AHA BLS Provider renewal)’은 교육생이 발급받은 이수증 사본을 해당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과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5.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은 개설 횟수에 제한이 없다.
6. 교육과정은 교육 1달 전에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www.kacpr.org)](http://www.kacpr.org))를 통하여 공지할 수 있다.
7. 교육과정과 교육생에 대한 문서(또는, 전자문서 포함)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문서에는 교육생 인적 사항, 서명지(강사, 교육생), 술기평가지, 필기시험 답안지, Course Roster 원본을 포함한다.
8. 매 과정마다 시험지(Written Examination)를 회수하여 외부에 누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교육생의 필기/실기 점수를 비밀관리 하여야 한다.
9. '의료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AHA BLS Provider)'은 필기평가와 2가지의 술기평가를 모두 통과하여야 과정에 합격할 수 있으며, 필기평가의 합격기준은 25점 만점에 21점 이상이며, 19점 또는 20점의 경우에는 다른 버전으로 재시험이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또한 AHA BLS Instructor 과정 입과 기준 필기평가 점수는 23점 이상이다. 단, 필기평가 재시험을 본 교육생은 불가하다.
10. 교육과정 후 7일 이내에 TC에 보고서(대한심폐소생협회 양식)를 제출한다.
11. 교육과정 합격생이 대한심폐소생협회를 통해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12. 불참 또는 불합격한 교육생에 대한 무료 재교육 가능유무는 교육기관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교육생에 공지하도록 한다.

**8.** **BLS TS 의 운영정지 및 지정 취소(위원회 협의 후 최종 결정)**

1.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는 BLS TS 현장실사를 나갈 수 있으며, BLS TS는 현장 실사를 협조한다.
2. BLS TS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운영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교육실적이 미비할 경우에는 서면보고서를 대한심폐소생협회로 제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제재를 할 수 있다.
3. 1차 위반 : 1차 경고
4. 2차 위반 : 사안에 따라 BLS TS 현장실사 후 BLS TS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

1. 3차 위반 : BLS TS 실사 후 BLS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BLS TS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ㄹ) BLS 교육 규정을 1차, 2차 위반시에는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BLS 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 3차 위반시에는 해당

과정을 불인정한다.

1. 의료인 심폐소생술 교육기관(BLS TS)의 경우 의료인 교육과정을 1년 2회 개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지정 취소된 TS는 2년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TS의 지정을 취소,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보관서류, 소속 강사, 교육생 등의 행정사항을 관리할 TS를 지정하거나 대한심폐소생협회로 이관한다.

**9. 기타 진행은 운영매뉴얼을 기준으로 하며 Training Center 인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운영지침을 준수한다.**

**10. 이 지침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대 한 심 폐 소 생 협 회**

**별첨1. 교육규정 위반 사례(예시) 및 제재 기준**

|  |  |
| --- | --- |
| **위반 사례(예시)** | - BP 미대상자 교육  - BP Renewal 미대상자 교육  - 강사 대 학생비율  - 장비 대 학생비율  - 시험지 버전 A, B사용  - 필수 술기과정 미교육  -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 생략  - 필기 합격 기준 위반  - 필기 재시험 기준 위반 [예 : 불합격(18점 이하)인데 재시험 시행]  - 일반인 강사가 BP 과정 교육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된 강사 교육 참여  - 기타 |
| **1차 위반** | 1차 경고 |
| **2차 위반** | 현장 실사 또는 BLS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2~6개월 운영정지 또는 자격정지 |
| **3차 위반** | 현장 실사 또는 BLS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BLS TS 지정 취소 또는 BLS Instructor 자격 취소 |
| **교육 과정**  **인정 여부** | 1차, 2차 위반시에는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위원회 협의 후 결정하며,  3차 위반시에는 과정 불인정 |